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IUU 어선 등재
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2010. 3. .

법무법인 대륙아주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및 방법	2
II. 주요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등의 IUU 어선 추정 규정 현황	3
1. 주요 지역수산물관리기구	3
가.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개요	3
나. 주요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IUU 어선 목록 관련 규정	4
2. 주요 국가	7
가. 미국	7
나. 호주 및 뉴질랜드	7
III. 사무국 컨설팅 논문의 내용	9
1. 연구자 및 연구 범위	9
2. 제3조(j)와 관련한 검토 내용	9
가.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사례	9
나. 제3조(j)의 입법취지	9
다. 제3조(j)의 문제점	10
3. 조문별 권고내용 및 검토의견	11

가. 제1조	11
나. 제4조	14
다. 제8조	16
라. 제9조	18
마. 제15조	20
바. 제19조	22
사. 제3조(j)의 합리화를 위한 권고 내용	23
IV.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합리화 방안	27
1.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내용	27
2.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문제점	30
가. 개요	30
나. 제3조(j)의 정당성 여부 검토	32
다. 제3조(j)의 “소유 또는 지배” 용어의 검토	40
라. 제3조(j)의 합리화를 위한 대안	44
IV. IUU 어선 등재 절차 규정 합리화 방안	50
1. 개요	50
2. 보존관리조치 상의 IUU 어선 목록 등재 절차 규정 검토	51
가. 회원국 등의 IUU 추정 어선 명단 제출	51
나. IUU 어선 목록 초안	52
다. IUU 어선 잠정 목록 및 현재 IUU 어선 목록	58

라. WCPFC IUU 선박 목록	62
마. WCPFC IUU 어선 목록의 변경	64

V. 보존관리조치 수정안 **67**

1. 제1조 (현행 유지)	67
2. 제3조 (추가)	67
3. 제4조 (추가)	68
4. 제8조 (추가)	68
5. 제9조 (추가)	68
6. 제15조 (추가)	69
7. 제16조 (추가)	70
8. 제19조 (추가)	71
9. 제20조 (추가)	71
10. 제23조 (수정)	71
11. 제25조 (추가)	72

※ 별첨 : 신구조문대조표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2007. 12. 7. 제4차 연례회의에서 IUU 어업에 대한 효율적 규제를 목적으로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중서부태평양에서 IUU 어업을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 목록 설치를 위한 보존관리조치’(이하 ‘보존관리조치’라고 함)¹⁾를 제정하였음.
- 보존관리조치는 제3조에서 10개 항에 걸쳐 선박이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규정하였는바, 그 중 하나인 제3조(j)항에서는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어선의 소유자가 지배하는 다른 어선도 IUU 어선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와 같은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규정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 등으로부터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WCPFC 기술이행위원회(이하 ‘TCC’라고 함)는 2008. 10. 제4차 정기회의에서 일단 제3조(j)를 IUU 어선 목록을 작성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음 정기회의에서 제3조(j)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논의하기로 하였음.
- 본 연구는 TCC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보존관리조치 제3조(j)가 국제어업규범으로서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고 적정하게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개발하는데 그

1) 정식 영문 명칭은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TO ESTABLISH A LIST OF VESSELS PRESUMED TO HAVE CARRIED OU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CTIVITIES IN THE WCPO(CMM 2007-03)”임

목적이 있음.

2.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보존관리조치는 (i) IUU 어업의 확인, (ii) IUU 어업 추정 정보, (iii) IUU 어선 목록 초안, (iv) IUU 어선 잠정목록 및 현재 IUU 어선목록, (v) WCPFC IUU 어선목록, (vi) WCPFC IUU 어선목록의 변경, (vii) 검토 등의 체계로 조문이 구성되어 있음.

본 연구는 위 보존관리조치 조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보존관리조치 제3조(j)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범위로 함.

○ 연구방법

IPOA-IUU가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로 하여금 IUU 어선목록을 유지하도록 권유함에 따라서(제81조제4항), ICCAT, CCAMLR, NAFO, NEAFO, IATTC, IOTC와 같은 주요 지역수산물관리기구들은 WCPFC 보존관리조치와 유사한 IUU 어선목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WCPFC 사무국의 용역에 따라서 호주 Wollongong 대학교 국제법 및 공법 교수인 William Edeson²⁾이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적정성여부,

2) William Edeson은 FOA legal officer로서 근무하면서 FOA의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nd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제정에 참여한 경력이 있음

제3조(j)의 어선을 IUU 어업 추정 어선으로 취급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규정을 검토한 컨설팅 논문을 제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및 미국, 호주 등 입법례의 조사, 국제법상 일반원칙의 검토, 사무국 컨설팅 논문의 분석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하여 보존관리조치 제3조(j)가 정당성을 갖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제3조(j)의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존관리조치의 절차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도록 함.

II. 주요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등의 IUU 어선 추정 규정 현황

1. 주요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가.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개요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는 1995년 설립된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FAO)의 행동규약 및 UN의 공해 어족 보존 협정과 같은 국제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다국적 기구로서, 회원국들의 협조를 통해 공해상에서 행해지는 어업을 규제하여 특정 어족(target-fish) 및 해양 자원을 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0년 현재 약 11개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오대양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고회유성 어족 자원(참치)의 장기적 보존 및 지속적 이용을 위해 설립된 기구(Tuna RFMOs)는 5개로서 구체적으로는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IATTC"),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ICCAT"),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IOTC") 및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등이 있음.

나.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IUU 어선 목록 관련 규정

- WCPFC 보존관리조치 제3조는 어선이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으며, 이 중 (j)항은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과 동일한 선주의 지배하에 하에 있는 나머지 선박들도 IUU 어업을 행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제3조(j)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IATTC

IATTC는 2005년 6월 24일 연례회의를 통해 보존관리조치를 제정하면서 제3조(j)와 동일한 IUU 어선 추정규정³⁾을 채택하였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조치는 마련되지 않았고 이를 실제 사안에 적용한 사례도 현재까지 전무함.

(2) SEAFO

UN 해상법 118조 및 UN 공해 어족 보존 협정에 의해 2001년 설립되었

3) Article 1.i. of Resolution C-05-07: Resolution to establish a list of vessels presumed to have carried ou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ctivities in the Eastern pacific ocean;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owner of any vessel on the IATTC IUU vessel list."

으며, 2007년 10월 연례회의를 통해 보존관리조치 08/06을 채택하고 결의하였고, 보존관리조치 08/06의 제3조는 WCPFC의 보존관리조치 제3조와 동일함.

(3) NAFO

2009년도 보존관리조치의제6장 56조 및 57조에 IUU 목록의 작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WCPFC 보존관리조치 제3조(j)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음.

(4) NEAFC

NAFO와 마찬가지로 WCPFC 보존관리조치 제3조(j)에 해당하는 조항은 없음.

(5) CCAMLR

뉴질랜드,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 지역의 섬나라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구로서 WCPFC 보존관리조치 제3조(j)에 해당하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음.

(6) ICCAT

ICCAT는 Tuna RFMO에 속해 있는 기구로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고 있으나⁴⁾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선주들이 선박 국적을 변

4) Article 1 of Recommendation by ICCAT amending the recommendation by ICCAT to establish a list of vessels presumed to have carried ou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ctivities in the

경(Re-flagging)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WCPFC와 같이 IUU 어선 목록에 포함된 선박의 선주가 소유한 모든 선박을 IUU 목록에 등재하는 3(j) 조항과 유사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7) IOTC

ICCAT와 동일한 보존관리조치⁵⁾를 채택하여 제3조(j)항과 유사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8)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CCSBT)

CCSBT는 남태평양 고회유성 어족의 보존을 위해 2003년 10차 연례회의에서 “Resolution on Illegal, Unregulated and Unreported Fishing (IUU) and Establishment of a CCSBT Record of Vessels over 24 meters Authorized to Fish for Southern Bluefin Tuna”를 결의하였으나, WCPFC 보존관리조치 제3조(j)항과 유사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9) South Pacific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sation (SPRFMO)

WCPFC의 보존관리조치 3(j)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주요 지역수산관리기구 중에서 IATTC나 SEAFO를 제외하고는 제3조(j)와 같은 조항을 갖고 있지 않으며, IATTC 등과 같은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적인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아니함.

ICCAT convention area

5) Article 1 of Resoluton 02/04 on establishing a list of vessels presumed to have carried ou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ctivities in the IOTC area

2. 주요 국가

가. 미국

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eauthorization Act of 2006(MSRA)은 “High Seas Driftnet Fishing Moratorium Act of 1826(Moratorium Protection Act)”의 개정을 통하여 제403조에서 IUU에 대한 정의⁶⁾를 규정하였고, 2010. 1. 12.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IUU 어업관련 조치의 이행 규칙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위 규칙이 확정되면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IUU 어선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기항과 일체의 보급이 거부되며, IUU 어선목록에 등재된 어선과의 상거래와 이들 대한 선박에 편의나 서비스 제공도 역시 금지될 예정임.

따라서, 미국은 IUU 어선으로 추정되는 상황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WCPFC의 IUU 어선목록에 등재된 선박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사료됨.

나. 호주 및 뉴질랜드

호주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접한 국가로서 여러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일원이며 이미 Fisheries Management Act 1991 (“FMA”)와 FMA 168(1)조에 따라 제정된 Fisheries Management (Southern Bluefin Tuna Fishery) Regulations 1995를 통해 호주 연안의 IUU행위를 규제⁷⁾해 오고

6) Section 609(e)(3)

7) 호주 연안에서 어업을 행하는 선박에 대한 라이선싱 및 IPOA-IUU와 맞먹은 NPOA-IUU 도입

있음.

FMA의 Schedule 3는 Compliance Agreement⁸⁾를 포함하고 있음. 즉, 호주는 WCPFC를 포함한 일원으로 있는 모든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공해상에서 어업을 행하는 호주 국적을 가진 모든 선박에 적용하기로 하였음.

다만, WCPFC의 보존관리조치 제3(j) 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호주 국내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음.

뉴질랜드의 경우, 2004년부터 FAO와 호주와 유사한 New Zealand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gulated & Unreported Fishing을 도입하여 IUU 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나, IUU의 정의에 IUU 어선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선주가 소유한 모든 선박이 IUU 목록에 등재될 것이라는 내용은 없음.

FAO의 IPOA에 따라 제정된 Fisheries Act 1996 및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Act 1981 과 Ships Registration Act 1992가 뉴질랜드 국적 선박의 공해상 어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만, WCPFC의 보존관리조치 제3(j) 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뉴질랜드 국내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음. 다만, 뉴질랜드의 IUU에 대한 법이 뉴질랜드가 속한 국제협약, 관리기구의 규정과 일관 되어야 하므로 WCPFC의 보존관리조치도 효력을 가질 것으로 보임.

8)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Ⅲ. 사무국 컨설팅 논문의 내용

1. 연구자 및 연구 범위

- 연구자는 호주 Wollongong 대학교 국제법 및 공법 교수인 William Edeson으로 과거 FOA legal officer로서 FOA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의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⁹⁾ 제정에 참여한 경력이 있음.
- 연구범위는 보존관리조치 제3조(j)에 규정되어 있는 선박의 취급과 관련하여 CMM 2007-03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제3조(j)의 선박을 취급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제3조(j)와 관련한 검토 내용

가.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사례

- SEAFO, IATTC 등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제3조(j)와 동일한 조문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문의 해석 및 적용을 위한 작업은 되어 있지 않음.
-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는 제3조(j)와 동일한 조문은 없음.

나. 제3조(j)의 입법취지

- 제3조(j)의 입법취지는 과거에 IUU어업에 참여한 선박들이 지배나 소유는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고, 단순히 등록을 바꾸는 방법으로 계속

9) 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nd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하여 IUU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음.

다. 제3조(j)의 문제점

- 선박의 복잡한 소유/지배 관계를 정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현실적으로 선박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편의치적(FOC)에 의하여 실질적 소유자가 은폐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 나용선 계약을 포함한 용선계약의 존재로 지배 또는 소유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임.

- 제3조(j)는 보존관리조치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점이 있음.

보존관리조치의 일부 조문은 제3조(j)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예컨대 IUU 선박리스트에 등재된 선박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은 선박을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게 하거나 삭제시키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않음.

- 제3조(j)는 IUU 어업 또는 어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하는 등 IUU 어업과 관련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함.

특정 선박이 WCPFC 적용지역에서 적절하게 활동한 경우, 또는 WCPFC 적용지역에서 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주가 동일하다는 연계성 때문에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되는 문제점이 있음.

연계성에 의존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선박에 대한 소유/지배 수준이 극히 낮거나, 선박이 WCPF 적용지역에서 조업한 일이 없거나 조업한 일이 있더라도 WCPF 조약을 준수한 경우처럼 이미 IUU 어선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과의 연계성이

회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계성만으로 선박을 IUU 어선목록에 등재한데는 신중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보존관리조치 제22조(b)는 IUU 어선목록에 등재된 선박이 자발적으로 항구에 입항하려는 경우에 회원국 등은 양육, 전채, 연료 및 물품의 제공급을 금지하고 입항 즉시 검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의 기국이 WCPFC를 상대로 해당 선박이 IUU 어선 목록에 잘못 등재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국제법은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TCC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선박이 IUU 어선목록에 등재된 선박 소유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여도 선박을 IUU 어선목록에 등재하지 않을 재량권을 행사할 권한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함.

3. 조문별 권고내용 및 검토의견

가. 제1조

(1) 권고내용

○ 요지

위원회의 IUU 선박 확인 대상에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가 지배하는 선박을 추가할 것을 권고

○ 권고 조문안

1. 위원회는 매년 연례회의에서 WCPF 조약과 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조약 적용 수역에서 조약이 보호하는 어족에 대하여 조업활동을 한 선박, 또는 WCPFC IUU 선박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가 지배하는 선박을 확인하여, 이 보존조치에서 수립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목록(IUU 선박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다음 연도에 수정한다.(가역)

At each annual meeting, the Commission will identify those vessels which have engaged in fishing activities for species covered by the Convention within the Convention Area in a manner which has under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WCPF Convention and the WCPFC measures in force, or which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owner of any vessel on the WCPFC IUU Vessel List and shall establish , and, as necessary, amend in subsequent years, a list of such vessels (the IUU Vessel Lis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criteria set out in this conservation measure.(원문)

○ 이유

현행 보존관리조치 제1조는 IUU 어업활동만 언급하고 있고, 제3조(j)에 의한 선박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흠결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내용을 추가함.

(2) 검토 의견 : 현행 규정을 유지함이 타당

- 제1조는 위원회가 IUU 어업을 한 선박을 확인하여 IUU 어선목록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고, IUU 어선 확인 및 목록 작성은 제3조에 의하여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가운데 추정이 반복되지 않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그런데 제3조(j)는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바로 위원회의 확인대상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제3조(j)도 제3조에서 IUU 어업을 한 선박으로 추정하는 유형의 1가지에 해당하는데 다른 유형은 확인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유독 제3조(j)의 선박만을 특별히 추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3) 수정안

1. 위원회는 매년 연례회의에서 WCPF 조약과 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조약 적용 수역에서 조약이 보호하는 어족에 대하여 조업활동을 한 선박, 또는 ~~WCPFC IUU 선박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가 지배하는 선박을~~ 확인하여, 이 보존조치에서 수립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목록(IUU 선박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다음 년도에 수정한다.

At each annual meeting, the Commission will identify those vessels which have engaged in fishing activities for species covered by the Convention within the Convention Area in a manner which has under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WCPF Convention and the WCPFC measures in force, ~~or which are under the control of the owner of any vessel on the WCPFC IUU~~

Vessel List and shall establish , and, as necessary, amend in subsequent years, a list of such vessels (the IUU Vessel List),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criteria set out in this conservation measure.

나. 제4조

(1) 권고내용

○ 요지

회원국이 TCC 연례회의 전에 송부해야 하는 IUU 어업 추정 선박 명단에 제3조(j) 추정 선박도 추가할 것을 권고

○ 권고 조문안

4. 각 회원국 등은 기술이행위원회(TCC) 연례회의 120일 전까지는 사무국장에게 해당 년도 및 전년도에 협약적용수역에서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그리고 WCPFC IUU 선박 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명단을 IUU 어업 추정에 관한 정보를 제2조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적정하게 서면화하여 송부해야한다.

At least 120 days before the annual meeting of the Technical and Compliance Committee (TCC), CCMs shall transmit to the Executive Director their list of vessels presumed to be carrying out IUU activities in the Convention Area during the current or

the previous year, as well as any vessels presumed to be under the control of the owner of a vessel on the WCPFC IUU Vessel List, accompanied by suitably documented information ,as provided in para2 ,concerning the presumption of this IUU activity.

○ 이유

현행 제4조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TCC에 “IUU 어업을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명단”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j)선박은 당해 선박이 IUU 어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될 필요는 없고, 단지 WCPFC IUU 선박 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배하는 선박인 점에 대한 입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2) 검토의견 :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 현행 제3조는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을 조업하는 선박은, 회원국 등이 당해 선박이 (a)~(j)호에 규정된 선박이라는 점에 관한 적절한 서면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협정지역에서 IPOA-IUU가 규정하고 있는 IUU 어업을 실행한 것으로 추정된다.¹⁰⁾”고 규정하고 있음
- 제3조의 문언에 의하면 제3조(j)의 선박도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협정지역에서 IUU 어업을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제3조(j) 선박을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없음.

10) For the purposes of this Conservation Measure, vessels fishing for species covered by the WCPFC Convention are presumed to have carried out IUU fishing activities, as defined in the IPOA on IUU fishing, in the Convention Area when a CCM present evidence that such vessels, *inter alia*: (a)~(j)

- 또한, 회원국 등은 제3조(j)의 선박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지 제3조(j)의 선박으로 추정되는 선박 명단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데도 권고안은 제3조(j)의 선박으로 추정되는 선박 명단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어서 IUU 어업 추정 선박 제출기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함

(3) 수정안

4. 각 회원국 등은 기술이행위원회(TCC) 연례회의 120일 전까지는 사무국장에게 해당 년도 및 전년도에 협약적용수역에서 제3조에 규정된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그리고 WCPFC IUU 선박 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명단을 IUU 어업 추정에 관한 정보를 제2조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적정하게 서면화하여 통보해야한다.

At least 120 days before the annual meeting of the Technical and Compliance Committee (TCC), CCMs shall transmit to the Executive Director their list of vessels presumed to be carrying out IUU activities in the Convention Area , as provided in para 3, during the current or the previous year, ~~as well as any vessels presumed to be under the control of the owner of a vessel on the WCPFC IUU Vessel List,~~ accompanied by suitably documented information, as provided in para2, concerning the presumption of this IUU activity.

다. 제8조

(1) 권고 내용

○ 요지

회원국 등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도 회원국 등과 같은 감시활동을 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

○ 권고 조문안

8. 회원국 등은 IUU 선박 목록 초안을 수령하는 즉시 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의 행동과 명칭, 국기, 등록 소유자의 변경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들 선박을 세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선박이 IUU 선박 목록 초안에 들어 있는 회원국 등이 아닌 국가는 당해 선박들의 행동과 명칭, 국기, 등록 소유자의 변경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들 선박을 세밀하게 감시하도록 촉구된다.

Upon receipt of the draft IUU Vessel List, CCMs shall closely monitor the vessels included in that list in order to follow their activities and possible changes of name, flag or registered owner. *Non CMMs whose vessels are on the draft IUU vessel list are urged to monitor the vessels on that list in order to follow their activities and possible changes of name, flag, and registered owner.*

○ 이유

비회원국들에게 회원국 등과 동일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의무사항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촉구하는 것으로 추가

(나) 검토의견 : 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

- 협정의 회원국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화할 수 없기 때문임.
- 다만, 장기적으로는 회원국 등이 아닌 국가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제9조

(가) 권고 내용

- 요지

IUU 목록초안에 자국 선박이 들어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회원국 등이 제시하는 의견에 해당 선박이 제3조(j)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추가

- 권고 조문안

9. 적절한 경우 목록에 자국 선박이 들어 있는 회원국 등 및 비회원국은 TCC 연례회의 30일 전까지 해당 선박이 WCPFC 보존조치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해당국가의 법령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거나, WCPFC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족만을 조업하였거나, 당해 선박이 WCPFC IUU 선박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는 의견을 적절한 서면 정보를 첨부하여 사무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As appropriate, CCMs and non-CCMs with vessels on the list

should transmit, at least 30 days before the TCC's annual meeting, their comments to the Executive Director, including suitably documented information, showing that the vessels have fish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WCPFC conservation measures o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 State when fishing in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at State, or have fished exclusively for species not covered by the WCPFC Convention, or that the vessels are not under the control of the owner of a vessel on the WCPFC IUU Vessel List.

○ 이유

현행 제9조는 IUU 어선 목록 초안에 들어 있는 선박이 WCPFC 보존조치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지역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거나, WCPFC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족만을 조업하였다는 점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기국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이 WCPFC IUU 선박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 소유주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제공하도록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 권고 조문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입증책임의 분배원칙 상 어떤 선박이 제3조(j)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한 회원국 등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기국이 그에 대한 반대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제9조는 IUU 어업 추정 선박에 대한 입증책임의 분배원칙과 관계없이 기국에게 선박이 IUU 어선으로 추정될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권한과 그 행사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국의 소명 내용에 해당 선박이 WCPFC IUU 어선 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권고안에 제시한 사유만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기국에게 제3조(j)의 추정을 반복할 수 있는 사유가 망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유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마. 제15조11)

(1) 권고 내용

- 요지

TCC가 IUU 어선 잠정목록에 선박을 등재하지 않을 사유에 선박의 기국이 당해 선박이 제3조(j)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를 추가

- 권고조문안

15. TCC는 선박이 기국이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IUU 어선 잠정 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11) 제15조와 관련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의 신설을 권고하는 의견도 추가로 있으나 위 권고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 사항에서 검토함

a.~c. (생략)

d. 선박이 WCPFC 어선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사실

15. The TCC shall not include a vessel on the Provisional IUU Vessel List if the vessel's flag State demonstrates that:

a. The vessel fish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WCPFC Conservation Measures o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 State when fishing in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at State, or have fished exclusively for species not covered by the WCPFC Convention, or

b. Effective action has been taken in response to the IUU fishing activities in question, such as, *interalia*, prosecution or the imposition of sanctions of adequate severity; or

c. That the case regarding the vessel or vessels that conducted IUU fishing activities has been settl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CCM that originally submitted the vessel for listing and the flag State involved; or

d. The vessel is not under the control of the owner of a vessel on the WCPFC IUU Vessel List.

(2) 검토의견 : 권고 조문안은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상 부당한 규정

- 권고 조문안은 IUU 어업 추정 선박 명단을 제출한 회원국 등이 입증해야 할 사항을 기국이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다만, 입증책임의 분배원칙에 맞게 회원국 등이 어떤 선박이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TCC는 IUU 어선 잠정목록에 해당 선박을 포함시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

(3) 수정안

- 현행 제15조를 제15조제2항으로 변경
- 제15조제1항으로 “TCC는 선박 명단을 제출한 회원국 등이 해당 선박이 제3조에 규정된 IUU 어업 추정 행위를 실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을 IUU 어선 잠정 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신설

바. 제19조

(가) 권고내용

- 요지

IUU 목록 소유자 정보란에 해당 선박을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

- 권고조문안

19. The draft IUU Vessel List, Provisional IUU Vessel List, and the WCPFC IUU Vessel List shall contain the following details for each vessel:

(iii) owner and previous owners, including beneficial owners,or other natural or legal persons capable of exercising control over the vessel, if any;

○ 이유

현실적으로 선박의 지배권자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3조(j)의 적용을 위해서는 선박의 지배에 대한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IUU 선박 목록 기재사항에 선박 지배권자에 관한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나) 검토의견 : 권고 조문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선박의 지배권 행사는 (iv)항 또는 (ix)항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에서 기재할 수 있지만,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소유자 정보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사. 제3조(j)의 합리화를 위한 권고 내용

(1) 권고 내용

○ 제15조의 2항과 3항으로 TCC에 IUU 어선 목록에 선박을 등재하지 않을 재량권을 부여하는 2개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

○ 권고 조문안

2. TCC는 기국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보아 다음 사항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을 IUU 선박 목록 초안 또는 IUU 선박 잠정 목록에 등재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a.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 소유자의 지배 수준이 IUU 선박 목록 초안 또는 선박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성격인 경우

b. 해당선박이 협정적용지역에서 WCPFC 보존조치에 일치되게 조업 하였거나, 어떤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일치되게 조업하였거나, 또는 WCPFC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어족만을 조업해 온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TCC는 기국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WCPFC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주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을 목록초안 또는 잠정목록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2. The TCC may decide that a vessel should not be placed on the draft or Provisional IUU List if it is satisfied, in the light of all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it, including nar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flag State that:

a. the extent of the control of an owner of a vessel already on the

WCPFC Vessel list is of such a character that the owner of the vessel on the WCPFC IUU vessel List is unlikely to be able to influence the fishing activities of a vessel that has been placed on the draft or provisional list; or

b. if it has been undertaking fishing in the Convention area, that the vessel has fish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WCPFC Conservation Measures or the laws and regulations of a State when fishing in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tate, or has fished exclusively for species not covered by the WCPFC Convention.

3. Notwithstanding sub paragraphs 1 and 2, the TCC may decide, in the light of all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including that of the flag State, that a vessel under the control of the owner of a vessel on the WCPFC IUU Vessel list shall not be placed on the draft or provisional list.

○ 2항 권고 이유

지배(Control)/소유(ownership)의 개념의 정의는 어려우므로 굳이 개념 정의를 시도하지 않고, 다만 대안으로, 예컨대 선박에 대한 복잡한 지분관계로 인하여 선박에 대한 지배가 미미하여 다른 선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TCC가 IUU 어선 목록에 해당 선박을 등재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 등을 권고함.

또한, 선주의 해당 선박에 대한 지배 또는 소유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국이 해당 선박이 보존관리조치나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CC에 IUU 어선목록에 등재하지 않을 재량권을 주는 것이 적절할 것임

○ 3항 권고 이유

제2항에 의하여 처리되는 경우 이외에,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제법이 불확실하거나 국제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TCC에 일반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도 유용할 것임.

예를 들면 제3조(j)를 적용하여 목록에 등재하려는 선박이 WCPFC 협정이 적용되는 공해상에서 조업을 해 온 경우에 해당 선박의 기국이 WCPFC 협정 또는 1995년 유엔어족자원협약의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기국의 입장에서 공해어업의 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견해도 가능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당분간 의견불합치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TCC가 IUU 어선 잠정목록에서 제외하도록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음.

(2) 검토의견

(가) 제2항 신설안 검토의견 : 신설안을 삭제함이 상당

- 제2항은 TCC가 IUU 어선 잠정 목록에 등재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또한 제2항 요건에 TCC가 만족하는 경우라는 주관적인 기준을 제기하고

있어서 문제임.

- 제2항(a)에서 선주가 어떤 선박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선주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제2항(b)에서 보존관리조치 등을 준수한 경우에는 현행 제15조의 규정되어 있는 추정 반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들도 모두 해당 선박을 IUU 어선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해야 할 의무적인 상황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재량권 행사 영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제15조를 제15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제15조제1항으로 “TCC는 선박 명단을 제출한 회원국 등이 해당 선박이 제3조에 규정된 IUU 어업 추정 행위를 실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을 IUU 어선 잠정 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

(나) 제3항 신설권고안 검토의견 : 이견 없음

IV.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합리화 방안

1.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내용

(가) 제3조(j)의 규정

제3조 이 보존조치를 위하여, 회원국 등이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하여 적절한 서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WCPFC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들을 조업하는 선박들은 협정수역에서 IPOA가 언급하

고 있는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j. 해당 선박이 WCPFC 선박 목록에 있는 선박 소유자의 지배를 받는 사실

(나) 제3조(j)의 법적 성격

- IPOA-IUU는 IUU 어업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지역수산물관리기구로 하여금 IUU 선박의 확인 및 목록 작성과 공개, 국가의 제재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IUU 어업이 선박 항행 중에 은밀하게 이루어져 입증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회원국 등으로부터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보고되고 해당 선박의 기국이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IUU 어업 선박 목록에 등재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IUU 어업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따라서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IPOA-IUU는 제3조에서 IUU 어업의 정의만 규정한 채, 제80.11조에서 각 국가로 하여금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하여 “선박이 IUU 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정의¹²⁾”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IUU 어업 추정 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은 각 지역수산

12) 80.11. definition of circumstances in which vessels will be presumed to have engaged in or to have supported IUU fishing;

관리기구에서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WCPFC도 보존관리조치 제3조에서 IUU 어업 추정 선박 규정을 마련한 것임.

(다) 제3조(j)의 적용요건

○ 제3조(j)의 문리해석에 의하면 어떤 선박을 제3조(j)에 의한 IUU 어선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박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i) 해당 선박은 WCPFC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을 조업하는 선박일 것

제3조 각 호를 제외한 본문에서 “WCPFC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들을 조업하는 선박”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박이 WCPFC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을 조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IUU 선박으로 추정되지 않음.

(ii) 해당 선박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WCPFC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것

위 요건에 따르면 WCPFC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이 있을 것이 전제조건이 되는데, 회원국 등은 TCC 회의 120일전까지 IUU 어업 추정 어선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원국 등이 어떤 선박이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하였다 고 보고한 연도에는 해당 선박의 소유자가 지배하는 다른 선박들은 제3조(j)에 의한 IUU 어업 추정 어선으로 인정되지 않음.

또한, 어떤 선박이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다음 해에 개최되는 WCPFC 연례회의 이전이나 연례회의에서 IUU 어선목록에서 삭제되

면 선주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선박은 제3조(j)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함.

따라서 어떤 선박이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다음 해 WCPFC 연례 회의 때까지 목록에서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3조(j)가 적용되어 그 선박 소유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다른 선박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

2.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문제점

가. 개요

- 보존조치 제3조의 IUU 어선 추정규정을 분석해 보면, 제3조(a)부터 제3조(h)까지의 규정은 무허가 조업, 금어지역 또는 금어기 동안 조업, 금지된 어구 사용, 어획량 미보고 등 IUU 어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을 IUU 어선 추정의 전제사실로 규정해두고 있음.

반면 제3조(j)는 어떤 선박이 WCPFC IUU 선박 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 소유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IUU 어업 선박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여 IUU 어업을 하지 않는 선박도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WCPFC 보존관리조치 제3조는 IUU 어업의 정의를 IPOA-IUU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IPOA-IUU는 IUU 어업에 해당되는 사유를 선박의 특정한 활동으로 한정하여 정의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조(j)는 IPOA-IUU의 IUU 정의 범위를 벗어난 면이 있고, 대다수 지역수산물관리기구도 제3조(j)와 같은 정의규정을 채택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큰 것임.

- 이와 관련하여 WCPFC 기술이행위원회(이하 'TCC'라고 함) 보고서¹³⁾에서는 제3조(j)가, IUU 어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소유자가 동인이 소유하는 선박 전체에 대하여 단체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회원국 등이 IUU 어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자국민 또는 실질적 소유자에 대하여 IPOA-IUU 제18조 및 제19조¹⁴⁾가 요구하는 대처수단을 이행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제3조(j)는 (i) 선단에 속해 있는 어선 1척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소유자/지배자가 동일한 전체 선단을 IUU 선박으로 등재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고, 위원회와 회원국 등이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하는데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며, (ii) 협정적용수역에서 조업할 필요성이 없는 어선도 IUU 선박목록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고, (iii) 규정에 포함된 소유/지배 개념은 선박에 대한 법률적 소유 또는 지배가 복잡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고(예를 들면, 개별 선

13) WCPFC TCC, CONSERVATION AND MANGEMENT MEASURE 2007-03: OUTSTANDING ISSUES FROM WCPFC4, 8항 참조

14) **제 18조 (가역)** 1982 유엔협약의 관련조항에 비추어 그리고 공해에서 기국의 우선적 책임을 침해하지 않고서, 각국은 가능한 최대한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국민들이 IUU어업을 지원하거나 종사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는 IUU 어업에 연관된 선박의 운영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인 국민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 19조 (가역) 국가는 자국의 국민들이 어선에 기국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의 관할하에 있는 어선에 국기를 부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박에 대한 소유관계가 여러 국가에 산재되어 추적이 불가능한 이익단체가 포함된 복잡한 공동소유 또는 실질적 소유자의 구조를 가질 수 있음), 제3조(j)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소유/지배의 수준 및 그 확인 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iv) 제3조(j)의 집행과 관련하여 선박을 IUU 선박목록에 포함시키고 삭제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는 점(예를 들면, IUU 어업활동에 직접 관여한 선박의 삭제가 제3조(j)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등록된 선박들의 삭제를 수반하는지 혹은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지 여부, 소유 또는 지배의 변동이 제3조(j)에 의하여 등록되는 IUU 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¹⁵⁾

나. 제3조(j)의 정당성 여부 검토

(1) 개요

제3조(j)의 정당성 여부 검토는 먼저 (i) 제3조(j)의 입법취지를 검토한 다음, (ii) 제3조(j)가 국제법규에 부합하는지 여부, (iii) 제3조(j)가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2) 제3조(j) 입법취지의 검토

일반적으로 어떤 규정의 입법취지 또는 입법 목적을 규명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적정성 여부와 적용범위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런데, 보존관리조치 제3조(j)는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어선

15) 각주 4 TCC 보고서 참조

의 소유자가 지배하고 있는 어선은 IUU 어업 또는 IUU 어업과 관련한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IUU 어선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여 보존관리조치 제3조(a)~(i)와 규제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취지를 살피는 것이 특히 중요한데, 이에 대하여는 TCC와 사무국 컨설팅 논문의 견해가 서로 상이하게 갈리고 있음.

(가) TCC 보고서의 견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CC 보고서에서는 제3조(j)의 입법취지가 IUU 어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동인이 소유하는 선박 전체에 대하여 단체적 책임을 부담시키도록 하고, 회원국 등이 IUU 어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자국민 또는 실질적 소유자에 대하여 IPOA-IUU 제18조 및 제19조가 요구하는 대처수단을 이행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데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나) WCPFC 컨설팅 논문의 견해

WCPFC 컨설팅 논문은 보존관리조치 제3조(j)의 입법취지를 “과거에 IUU어업에 참여한 선박들이 지배나 소유 관계는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이 단순히 등록을 바꾸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IUU 어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음¹⁶⁾.

(다) 검토의견

16) 동 논문 IV. 첫 문장 참조. “The clear objective of paragraph 3.j is to prevent vessels with a previous involvement in IUU fishing to be able to carry on such fishing simply by changing registration, when the control or ownership of the vessel remains substantially unchanged.”

- WCPFC 컨설팅 논문의 견해는 보존관리조치 서문에서 “IUU 선박 소유주들이 WCPFC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목적으로 선박 국적을 변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보존관리조치 제정 배경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에서 전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WCPFC 컨설팅 논문의 견해대로라면 IUU 어업에 참여한 전력이 없는 선박을 제3조(j)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현행 보존관리조치 제3조(j)는 이러한 선박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WCPFC 컨설팅 논문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제3조(j)의 입법취지는, TCC 보고서의 견해에 따라, IUU 어업으로 불법이익을 취득하는 선주의 경제적 동기를 억지하여 IUU 어업활동에 대한 규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IUU 어업의 기본적 동기는 선주의 이욕(利慾) 추구에 있으므로¹⁷⁾, 효율적인 IUU 어업 규제를 위해서는 선주가 IUU 어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IUU 어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IUU doesn't pay)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IUU 어선의 선주가 지배하는 다른 어선들도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이들 어선도 IUU 어선과 같은 제재를

17) OECD, *Why Fish Piracy Persists: The Economics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OECD, Paris, 2005. 참조

받도록 하게 되면 IUU 어선의 선주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것이 명백하므로 제3조(j)의 입법취지는 IUU 어선의 선주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서 IUU 어업을 억지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3) 제3조(j)의 국제법과 관련한 검토

(가) 개요

- 보존관리조치 제3조(j)는 IUU 선박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가 지배하는 모든 선박을 IUU 어업 추정 선박으로 간주하여 IUU 어선 선주가 지배하는 선박 전체에 대하여 단체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법원(法源)으로 인정되고 있는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¹⁸⁾인 “비례성의 원칙”과 IPOA-IUU 제66조에 규정된 “공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한 검토

- 비례성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은 국제법상 일반원칙으로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익의 침해라는 수단을 채택한 경우에 목적과 수단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함.

18) 법의 일반원칙이란 각국의 국내법에 공통된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 국가 간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말하는데, 이러한 법의 일반원칙은 국제법의 독자적인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며, 특히 ICJ는 여러 차례 이를 재판준칙으로 채택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음.

- "IUU 어업 방지, 억지 및 근절을 위한 EU 시스템 확립 규칙(EC NO 1005/2008)" 서문 제39조에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서, 본 규칙에서 예상되는 조치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것은 IUU 어업의 근절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 본 규칙은 조약 제5조제3항에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례성의 원칙은 WCPFC가 IUU 어업 규제 수단을 마련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원칙이라 할 것임.
-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조약이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비례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WCPFC 보존관리조치가 국내법으로 편입되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따라서, 제3조(j)가 국제법규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이상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IUU 어업의 근절이라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 IUU 어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선주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IUU 선박 소유자의 모든 선박을 IUU 어선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것은 선주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선박을 소유한 국가가 개발도상국일 경우 당해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데, 어떤 어선이 IUU 어업을 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선주는 IUU

어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선주의 지배 하에 있는 다른 선박들이 IUU 어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조(j)에 규정된 내용은 목적에 비하여 수단이 과도한 제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다) IPOA-IUU 제66조의 공정성 원칙 관련 검토

- 보존관리조치 제3조의 추정 규정(presumption clause)은 IPOA-IUU 가 지역수산관리기구에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을 정의 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인데, IPOA-IUU 제66조는 지역 수산관리기구에 의한 IUU 어선의 확인은 공정, 투명,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⁹⁾.
- 그런데, 보존관리조치 제3조는 회원국 등이 동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전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 조항이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선박이 IUU 어업을 하였을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황으로 한정하여 전제사실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되는바, 보존관리조치 제3조(j)에 규정된 ‘IUU 선박 목록에 있는 선박 소유주가 지배하는 선박’이라는 전제사실은 공정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즉, 어떤 선박이 IUU 어업 및 그와 관련된 행위를 우발적, 부주의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당해 선박의 소유자가 그와 같은 행위에 전

19) 66. The identification of the vessels by th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be made through agreed procedures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혀 관여한 사실이 없을 수도 있으며, 선주의 지배하에 있는 다른 선박들이 IUU 어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선박이 IUU 선박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소유자가 지배하는 선박이라는 점은 해당 선박을 IUU 어업을 한 것으로 합리인 의심할 상황으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하여 관련 선박의 기국이 해당 선박은 IUU 어업과 관련이 없다는 반대증거를 제시하여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제3조(j)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을 전제사실로 규정한 다음에 관련 기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추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분배가 잘못된 것으로 결국 제3조(j)는 입증책임이 왜곡되어 공정한 절차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4) 제3조(j)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

(가) 조직화된 IUU 어업 행위자에게는 실효성이 없음

현재 국제적으로 합작기업, 페이퍼 컴퍼니 등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익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직화된 IUU 어업을 하는 선주는 위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쉽고 저렴하게 국적과 신분을 감출 수 있어 제3조(j)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게 될 수 있음.

위와 같이 선박의 소유관계를 은폐해버리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를 추적하는데 많은 시간 및 인력이 소요되어 그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

게 되고, 결과적으로 선박의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일치하는 정상적인 선주만이 제3조(j)를 적용받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됨.

(나) 위원회의 실질적 소유자 확보 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제3조(j)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IUU 어업을 하는 선주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선박의 명목상 소유자를 달리하는 조치(전형적인 케이스로는 한 회사가 선박 1척만을 소유하고 그 회사는 명목상 주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음)를 해두거나, 어떤 선박이 IUU 어업을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선박의 소유권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3조(j)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 예상됨.

따라서, 제3조(j)는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증가시키고, 실질적 소유자의 발견도 어렵게 하여,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 확인이라는 위원회의 정책 달성이 더욱 어렵게 우려가 있음.

(다)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와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음

보존관리조치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IUU 어선 목록을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수산관리기구는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로부터 제공받은 IUU 어선목록에 등재된 어선에 대하여 자신들의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어선과 동일한 제재를 부과함.

그런데, 대부분 지역수산관리기구는 제3조(j)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가 WCPFC에 송부하는 IUU 어선 목록

에는 제3조(j) 적용 대상에 준하는 선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WCPFC 회원국은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회원국 등과 비교하여 불평등한 제재를 받게 됨.

다. 제3조(j)의 “소유 또는 지배” 용어의 검토

(1) 선박의 소유자 개념의 명확성 여부

선박의 소유자는 법인격을 기준으로 자연인과 법인, 소유형태를 기준으로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나, 해당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뿐, 개념에 대한 해석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개념 자체에 명확성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선박이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단독소유인 경우에는 그 자연인과 법인을 제3조(j)에 규정된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선박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든 지분권자를 소유자로 할 것인지 혹은 지분권자 중에서 지배적 지분권을 소유한 자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지분권자를 모두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제3조(j)의 규정 취지가 IUU 어선 선주의 경제적 동기를 공격하여 선주가 IUU 어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시키는데 있으므로 IUU 어선의 조업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지배적 지분권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지배적 지분권자의 형태와 비율은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각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어 사전에 특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특정 기준을 만드는 경우에는 선주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실효성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므로 지배적 지분권자를 적극적으로 정의하기 보다는 모든 지분권자를 소유자로 추정하고, 관련 기국이 문제된 지분권자가 선박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았은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당해 지분권자가 지배하는 선박을 IUU 어선 추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지배적 지분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는 지분권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을 지분권자가 해명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도 타당함

또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하고 선박의 소유자가 감독 또는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IUU 어업이 이루어졌거나, IUU 어업이 선주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IUU 어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선박 소유자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동인이 지배하는 선박을 IUU 어선 추정에서 제외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명목상의 소유자와 실질적 소유자의 개념도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률용어로서 개념 자체는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제3조(j)는 선박의 소유자라고만 규정하여 명목상의 소유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병존하는 경우 모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명목상 소유자와 실질적 소유자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 제3조(j)의 규정취지가 선주의 경제적 동기 제거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 보다는 용선자가 IUU 어업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용선자(charterer)를 선박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3조(j)의 “선박소유자”를 “선박 소유자(실질적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용선자)”로 규정함이 타당함.

(2) 선박의 지배

선박의 지배라는 개념이 일반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수산업법 제32조 제1항에서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령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불명확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지배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는데, 지배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사용인을 통하여 선장 또는 선원의 임면, 조업활동 및 선박관리 등 선박의 운영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구체적 사건에서 선박의 운영사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를 규명한 다음에 경험칙과 상식을 적용하여 case by case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와 관련하여 WCPFC 컨설팅 논문은 지배(control) 또는 소유

(ownership)에 대한 정의가 어렵다는 전제 하에 대안으로 선박에 대한 지배가 미미한 경우에는 TCC가 해당 선박을 IUU 선박 목록에 등록하지 않을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보존조치 제15조2항에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 소유자의 지배 또는 소유의 정도가 다른 선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TCC가 해당 선박을 IUU 선박 목록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음.

제15조2항 신설권고안 내용

2. TCC는 기국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다음 사항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을 IUU 선박 목록 초안 또는 IUU 선박 잠정 목록에 등록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 a. IUU 선박 목록에 등록된 선박 소유자의 지배 수준이 IUU 선박 목록 초안 또는 선박 잠정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성격인 경우

그러나, 선박에 대한 지배수준이 선박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양는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지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권고안이 상정하는 경우는 제3조(j)의 지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필요적으로 IUU 선박 목록에 해당 선박을 등재해서는 안 되는 경우이지 TCC 혹은 위원회가 재량권을 행사할 사안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안은 타당하지 않음.

라. 제3조(j)의 합리화를 위한 대안

(1)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가) 검토 내용

- 보존관리조치 제3조(j)와 같이 IUU 어선목록에 등재된 선주가 지배하는 모든 선박을 IUU 어선으로 추정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과 공평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조직적 또는 상습적으로 IUU 어업을 하는 선주에게는 실효성이 없는 반면에 일반 선량한 선주들만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역효과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존관리조치 제3조(j)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면서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IUU 어업을 조직적, 상습적으로 하는 선주는 당국에 의한 경제적 이익 박탈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3조(j)가 선주의 위와 같은 단절행위에 대한 억지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질적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를 단절시키면서 IUU 어업을 하는 선주가 지배하는 선박이 WCPFC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을 조업하는 경우에는 경험칙상 그 선박도 IUU 어업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비록 그 선박이 IUU 어업을 하였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IUU 어선으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IUU 선박의 실질적 선주와 명목상 선주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선주의 다른 선박은 IUU 추정 어선에서 제외하고,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선주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을 IUU 어업 선박으로 추정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이 제한을 가함으로써 TCC가 제3조(j)의 입법취지로 주장하는 회원국 등으로 하여금 IPOA-IUU 제18조 및 제19조가 요구하는 실질적 소유자의 확인 의무를 이행시키는데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을 판단됨.

다만, IUU 어업 목적이 아닌 다른 합법적인 동기에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목상의 소유자를 달리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그 사유를 입증하게 하여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

- IUU 어업을 목적으로 선주가 실질적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를 불일치시키는 경우에는 대부분 선박 소유자가 역외지역에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하여 선박을 소유하고, 명목상 주주, 명목상 이사, 대리인 등을 사용하거나, 편의치적 또는 개방치적제도를 이용하여 선박 등록을 하여 실질적 소유자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제3조(j)를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제한하면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바, 그와 같은 선박이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기국이 IUU 어선 목록에서 해당 선박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기존

소유자가 전혀 관여를 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해야만 삭제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규제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

(나) 조문안

○ 위와 같은 검토내용을 구현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보존관리조치 수정안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1안) 제3조(j) 자체를 수정하는 안

제3조 이 보존조치를 위하여, 회원국 등이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하여 적절한 서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WCPFC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들을 조업하는 선박들은 협정수역에서 IPOA가 언급하고 있는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j. 해당 선박이 WCPFC 선박 목록에 있는 선박 소유자의 지배를 받는 사실. 다만, WCPFC 선박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의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는 제외

제9조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기국인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은 최소한 TCC 연례회의 개최전 30일 이전에 사무국장에게 적절한 서면 정보를 포함하여 ① 해당 어선이 WCPFC 보존관리조치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조업해 온 사실, 또는 ② 해당 어선이 어떤 국가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할 때 그 국가의 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조업활동을 해 온 사실, 또는 ③ 해당 어선이 WCPFC 협약이 취급하지 않는 어족만을 조업한 사실, 또는 ④ 제3조(j)에 규정된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일치하거나 IUU 어업과 무

관한 이유로 일치하지 않게 된 사실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25조 자국 선박이 WCPFC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회원국 등과 비회원국 등은 각 회기 사이에 언제든지 사무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적정한 서면정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박의 선박목록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f.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IUU 어선의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어선을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 **(제2안) 제3조(j)는 유지하고 추정변복 사유를 신설하는 방안**

제3조(j) (현행 대로 유지)

제9조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기국인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은 최소한 TCC 연례회의 개최전 30일 이전에 사무국장에게 적절한 서면 정보를 포함하여 ① 해당 어선이 WCPFC 보존관리조치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조업해 온 사실, 또는 ② 해당 어선이 어떤 국가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할 때 그 국가의 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조업활동을 해 온 사실, 또는 ③ 해당 어선이 WCPFC 협약이 취급하지 않는 어족만을 조업한 사실, 또는 ④ 제3조(j)에 규정된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일치하는 사실, 또는 ⑤제3조(j)에 규정된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IUU 어업과 무관한 이유로 일치하지 않게 된 사실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25조 자국 선박이 WCPFC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회원국 등과 비회원국 등은 각 회기 사이에 언제든지 사무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적정한 서면정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박의 선박목록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f.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IUU 어선의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어선을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 제1안대로 하더라도 기국이 선박의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일치하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제2안과 크게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정의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제2안이 더 바람직한 것이므로 이를 제안함.

제2안에 의하면 ① 회원국 등은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주가 지배하는 선박 명단을 제출하여 IUU 어선 목록에 등재해줄 것을 요구 ⇒ 기국이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일치하거나, IUU 어업과 무관한 이유로 불일치하게 되었음을 입증하여 다른 선박의 등재를 방지할 수 있고,

② IUU 어선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기국이 실질적 소유자가 위 선박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IUU 어선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게 됨.

(2) 제3조(j)에 따른 선박에 대한 제제 수준에 차등을 두는 방안 (제3안)

- 제3조(j)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는 점, 대부분 지역 수산관리기구는 제3조(j)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도 아직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점, IUU 어선목록은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와 정보교환대상이 되어 회원국 등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제3조(j)의 규정에 의한 선박은 IUU 선박 목록에 등재하지 말고 IUU 어선 잠정목록에만 등재하여 Naming and Shaming 효과는 거두면서, 회원국 등의 제제 및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대한 정보교환 대상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제3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조문안

현행 제20조를 수정하여, “위원회는 매 연례회의에서 적정한 서면 정보가 새롭게 제출되면 이를 참작하여 IUU 어선 잠정목록을 심사하여 --- (중략) --- 새로운 WCPFC IUU 어선목록을 채택한다 (다만, 제3조(j)에 의한 선박은 WCPFC IUU 어선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로 규정

(3) 소결론

- 제3조(j)를 합리화 하는 현실적 대안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여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방안	제3조(j) 수정여부	추정 번복 사유	효력
제2안	수정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 IUU어업 외의 목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 ○ 현행 3조(j)와 관련한 추정 번복 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UU 어선목록에 등재 ○ 동일한 제재 및 정보교환 대상
제3안	수정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 IUU 어업 외의 목적으로 불일치하는 경우 ○ 현행 3조(j)와 관련한 추정 번복 사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UU 어선 잠정 목록에 등재 ○ 제재 대상, 정보교환 대상이 안 됨

IV. IUU 어선 등재 절차 규정 합리화 방안

1. 개요

- 현재 WCPFC외에 CCAMLR, IATTC, ICCAT, IOTC, NAFO, NEAFC, SEAFO, ASCO 등 9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가 IUU 선박 목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대부분 지역수산관리기구의 IUU 선박목록 제도는 회원국 등이 IUU 어업 추정 어선 명단과 서면 증거를 제출하면, 이를 IUU 어선 잠정 목록으로 작성하여 회원국 등에게 제공하고, 관련 기국이 추정 번복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위원회에서 회원국의 총의에 의하여 IUU 어선 잠정목

록을 토대로 IUU 어선 목록을 작성하며, 작성된 IUU 어선목록은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제공하고, 그 후 일정한 삭제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회원국 등의 총의에 의하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음.

2. 보존관리조치 상의 IUU 어선 목록 등재 절차 규정 검토

가. 회원국 등의 IUU 추정 어선 명단 제출

(1) 회원국 등 사무국장에게 IUU 어업 추정선박 명단 제출

○ 조문내용

보존관리조치 제4조에서는 회원국 등은 TCC 연례회의 120일전까지 사무국장에게 해당 년도 및 전년도에 협약지역에서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명단을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면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위 조항과 관련하여 회원국 등이 TCC 연례회의 120일전까지 IUU 어업 추정명단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 적절한 기간인지 여부를 검토하면, 중서부고도회유성어류보존관리협약 제23조제5항, 제25조제2항에서 관련 기국으로 하여금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해당 선박의 보존관리조치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음.

다만, 회원국 등이 해당년도와 전년도에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

는 어선 명단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IUU 어선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전년도 TCC 연례회의 개최 120일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명단 제출과 중복되어 제출될 수 있으므로, 회원국 등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년도를 전년도 TCC 연례회의 개최 전 120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2) 회원국 등이 관련 기국에 선박 명단포함사실 통보

○ 조문 내용

보존관리조치 제5조 전단은 회원국 등이 사무국장에게 IUU 추정 어선 명단을 제출하기 이전 또는 동시에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련 기국에 선박이 명단에 포함되었음을 통보하고 관련 서면 정보 사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제5조 후단은 관련 기국은 즉시 통보수령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관련 기국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령사실의 통지가 없으면 TCC가 다른 경로를 이용하여 재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이견 없음.

나. IUU 어선 목록 초안

(1) 사무국장의 회원국 등에 대한 IUU 목록 초안 송부 등

○ 조문내용

보존관리조치 제6조는 사무국장이 TCC 연례회의 90일 전까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선박명단과 서면정보, 기타 사용가능한 서면 정보가 포함된 IUU 어선목록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입증정보와 함께 모든 회원국 등 및 목록초록에 선박이 등재되어 있는 회원국 등이 아닌 국가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보존관리조치 제7조 및 제9조는 사무국장은 어선이 IUU 어선 목록 초안에 등재되어 있는 회원국 등과 회원국 등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 선박의 소유자에게 목록 초안에 포함된 사실과 IUU 선박목록에 포함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결과를 통지할 것으로 요구하도록 규정함.

보존관리조치 제8조는 회원국 등은 어선 목록 초안을 수령한 즉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선박을 감시하여 선박의 활동, 국기 또는 등록소유자의 변경 가능성을 지켜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사무국 컨설팅 논문은 제8조에 사무국장이 회원국 등이 아닌 국가에 대하여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선박을 감시하여 선박의 활동, 국기 또는 등록소유자의 변경 가능성을 지켜보도록 촉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타당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2) 어선이 목록초안에 등재된 회원국 등의 조치사항

(가) 조문내용

보존관리조치 제9조는 어선이 목록초안에 등재된 회원국 등, 회원국

등이 아닌 국가는 TCC 연례회의 30일전에 사무국장에게 서면정보를 첨부하여 다음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어선이 WCPFC 보존관리조치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조업해 온 사실
- 해당 어선이 어떤 국가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할 때 그 국가의 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조업활동을 해 온 사실
- 해당 어선이 WCPFC 협약이 취급하지 않는 어족만을 조업한 사실

(나) 검토의견

- 보존관리조치 제9조는 회원국 등이 TCC에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 어선의 기국으로 하여금 추정을 번복하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것임.
- 기국에게 30일전에 추정 번복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협약 제25조제2항에서 회원국인 기국은 자국기를 게양한 어선의 위원회가 정한 보존관리조치 위반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를 하고 요청이 있는 지 두 달 이내에 위반혐의와 관련하여 취했거나 취하기로 한 조치를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동 조사결과보고서를 동 요청국가와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 기국은 협약 제25조제2항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보존관리조치 제9조에 규정된 90일은 2개월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시한으로 판단됨.

또한, 기국이 추정반복 사실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협약 제25조제2항에 부합하므로 규정상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어선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기국이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국 단독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협약 제23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국민이나 자국민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어선에 의해 본 협약의 조항이나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한 최대한 조사하여야 하고, 그런 요청이 있는지 2개월 내에 조사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국가와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존관리조치에서 IUU 어선 목록 작성과 관련해서도 협약 제23조제5항이 적용되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3조(j)와 관련하여 관련 기국이 실질적 소유자가 국민인 회원국 등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는 다른 선박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추정 반복 사유에 대한 검토

보존관리조치 제9조는 3가지 추정 번복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3가지 추정 번복 사유는 제3조(a)부터 제3조(i)의 경우뿐만 아니라 제3조(j)에 의하여 IUU 어선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그런데, 보존관리조치 제3조는 IUU 어업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관란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법률상 추정규정을 둔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 방지 및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자가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추정을 번복시키는 방법은 ① 추정의 기초가 되는 전제사실의 입증을 다투어 추정을 사전에 저지하는 방법과 ② 전제사실이 이미 입증된 경우 전제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방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존관리조치 제9조의 사유는 ①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일부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 방지 및 공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대폭적인 정비가 불가피함.

특히, 제3조(j)와 관련해서는 추정규정의 번복사유가 충분하지 않는데, 사무국 컨설팅 논문은 제9조 d항으로 해당 선박이 WCPFC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는 않는 사실을 추가하는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제3조(j)가 공평한 추정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컨설팅 논문에서 권고한 사유 외에 다음 추정 번복 사유를 추가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추가 사유 가운데, ④항과 ⑤항은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이

므로 이를 추가한 것임

- ① 제3조(j)의 선박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 ② IUU 선박 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의 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IUU 어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 ③ 선박 소유자의 감독 또는 관리 소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UU 어업 목록에 등재된 선박이 IUU 어업을 하였고, 문제되는 IUU 어업이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④ 문제된 IUU 어업활동에 대하여 기소, 적절한 강도의 제재 부과, 즉, IUU 어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등과 같은 효과적 행동이 조치되었다는 사실
- ⑤ IUU 어업을 한 선박과 관련한 사건이 최초 해당 선박의 목록등재를 신청한 국가와 기국 사이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는 사실
- ⑥ 해당 선박이 WCPFC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거나, 그 지배 수준이 해당 선박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사실
- ⑦ IUU 어선 목록 선박의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일치하거나, IUU 어업 외의 목적으로 불일치하다는 사실

* 제6항은 선박의 소유자 또는 지배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제7항은 제3조(j)를 제한하기 위한 대안 제2안에 따른 규정임.

(3) 사무국장의 IUU 목록 초안 재배포 등

(가) 조문내용

사무국장은 TCC 연례회의 2주 전에 회원국 등과 관련 비회원국 등에 IUU 목록 초안을 제4조와 제9조에 의하여 제공된 서면정보를 첨부하여 재배포하여야 함(제10조).

회원국등 과 비 회원국 등은 언제든지 IUU 선박 목록 초안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에 관한 추가 서면 정보를 제출할 수 있고, 사무국장은 해당 정보를 수령하는 즉시 모든 회원국 등과 관련 비회원국 등에 배포하여야 함(제11조).

(나) 검토 의견 ; 이견 없음.

다. IUU 어선 잠정 목록 및 현재 IUU 어선 목록

(1) 사무국장의 임무

(가) 조문내용

○ 사무국장은 전년도에 채택된 WCPFC 선박 목록, 회기 중간 수정내용 및 목록 관련 새로운 서면정보를 제6조에 규정된 IUU 선박목록 초안

과 함께 모든 회원국 등 및 관련 비회원국 등에 제공해야 함(제12조).

- 현행 WCPFC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이 있는 회원국 등과 비 회원국 등은 제25조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한 서면정보를 TCC 연례회의 30일 이전까지는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이전에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음. 사무국장은 현행 WCPFC 선박목록을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모든 정보와 함께 TCC 연례회의 2주전에 회원국 등 및 관련 비회원국 등에 재배포 하여야함(제13조).

(나) 검토의견 : 이의 없음.

(2) TCC의 임무

(가)조문내용

- TCC 연례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하여야 함(제14조).
 - IUU 선박목록 초안과 보존조치 제6조, 제10조, 제11조의 서면정보를 고려하여 IUU 선박 잠정 목록을 채택
 - 현행 IUU 선박 목록과 제12조, 제13조의 서면정보를 검토하여 위원회에 현행 IUU 선박목록에서 삭제할 선박의 권고
- TCC는 제14조에 규정된 사항을 검토한 다음 위원회에 IUU 선박 잠정 목록을 검토하도록 제출하여야 하고, 적당한 경우 현행 WCPFC IUU 선박 목록 변경안을 권고해야함(제18조).
- 해당 선박의 기국이 사무국장에게 제25조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현행 WCPFC IUU 선박목록에서 해당 선박의 삭제를 권고할 수 있음(17조).

○ TCC는 선박의 기국이 다음사항을 주장 입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IUU 선박 잠정 목록에 포함시키면 안 됨(제15조).

a. 선박이 WCPC 협정지역 혹은 어떤 국가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면서 WCPFC 협정이나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한 사실, WCPFC 협정이 취급하지 않는 어족만을 조업한 사실

b. 문제된 IUU 어업활동에 대하여 기소, 적절한 강도의 제재 부과 등과 같은 효과적 행동이 조치되었다는 사실

c. IUU 어업을 한 선박과 관련한 사건이 최초 해당 선박을 목록등재를 신청한 국가와 기국 사이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는 사실

○ TCC는 회원국 등이 제5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을 IUU 선박 잠정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안 됨(제16조).

○ IUU 선박 목록 초록, IUU 선박 잠정 목록, WCPFC IUU 선박 목록 기재내용(제19조).

(나) 검토의견

○ TCC는 IUU 어선 잠정목록 작성과 위원회에 IUU 어선 목록에서 삭제할 선박을 권고하는 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보존조치 제15조와 제16조에서 TCC가 IUU 어선 잠정목록에 선박

을 등재하면 안 되는 4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추정반복 사유를 모두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추정 반복 사유를 전부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WCPFC 컨설팅 논문은 제15조 제2항에 IUU 선박목록에 등록된 선박 소유자의 지배 또는 소유의 정도가 다른 선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TCC가 해당 선박을 IUU 선박 목록에 등록하지 않도록 재량권을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선박에 대한 지배수준이 선박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선박에 대한 지배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TCC가 필요적으로 IUU 선박 잠정 목록에 해당 선박을 등록해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할 사안이지, TCC가 재량권을 행사할 사안은 아니므로 권고안은 타당하지 않음.

○ 또한, WCPFC 컨설팅 논문은 제3조(j)를 적용하여 목록에 등록하려는 선박이 WCPFC 협정이 적용되는 공해상에서 조업을 해 왔고, 해당 선박의 기국이 WCPFC 협정 또는 1995년 유엔어족자원협약의 회원국이 아닌 경우에는 기국은 공해어업의 자유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견해도 가능한 것처럼 특정 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제법이 불확실하거나, 국제법적 책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제15조제3항을 신설하여 TCC에 일반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신설권고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선박목록 초안 작성은 TCC의 권한이 아니고 사무국장의 권한이므로 선박목록 초안에 등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15조3항 신설권고안 내용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TCC는 기국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WCPFC 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 소유주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을 목록초안 또는 잠정목록에 등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수정조문안

- TCC는 선박의 기국이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주장 입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IUU 선박 잠정 목록에 포함시키면 안 됨(15조제1항).
- TCC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을 잠정목록에 등재하지 않을 수 있음.

라. WCPFC IUU 선박 목록

(1) 조문내용

- 위원회는 연례회의에서 IUU 선박 잠정 목록과 제18조에 따른 현행 IUU 선박목록 변경 권고를 참작하여 새로운 WCPFC 선박 목록을 채택하여야 함. 회원국등과 관련 비회원국등은 위원회의 연례회의 2주전까지는 최대한의 서면정보를 제출해야함(제20조).
- 위원회는 새로운 WCPFC 선박 목록을 채택하는 즉시 목록에 등재된 선박을 보유한 CCMs와 Non-CCMs에 다음 사항을 요구해야 함

(제21조).

- a. 선박소유자에게 WCPFC 선박 목록에 선박이 등재된 사실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 b. 필요한 경우 선박등록 또는 어업허가 취소 등을 포함하여 IUU 어업활동을 근절시키는데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고 위원회에 조치내용을 통보
- 회원국들은 적용가능한 법령, 국제법, 국제적의무, IPOA-IUU 55조 및 56조에 따라서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차별적 조치를 취해야함(제22조).
 - 사무국장은 WCPFC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WCPFC IUU 선박목록의 공표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IUU 어업을 예방, 억지, 근절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목록을 FAO 혹은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제공해야함(제23조).
 - 회원국 등과 연안국가가 국제법과 적용가능한 WTO 의무에 부합하게 적정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해하지 않고, 회원국 등은 제6조 또는 제14조의 IUU 선박 목록초안 또는 IUU 선박 잠정목록에 등재된 선박, 제17조와 제20조에 의하여 WCPFC IUU 선박목록에서 삭제된 선박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이 IUU 어업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단독적인 무역조치 혹은 다른 제재를 가해서는 아니 됨(제24조).

(나) 검토의견

- 보존조치 제23조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선박목록을 FAO 혹은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는 일반적으로 자신들이 작성한 IUU 선박목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제재를 가함.
- 그런데, 대부분 지역수산관리기구는 보존조치 제3조(j)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WCPFC 회원국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즉, 이미 등재되어 있었거나, 실제 IUU 어업을 하여 잠정목록에 등재된 IUU 선박과 IUU 어업을 한 어선과의 소유권 및 통제권의 연계로 인해 잠정목록에 등재된 어선을 따로 구분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음. IUU 선박목록에 등재 사유의 구분 없이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제공되어 확정되지 않은 또는 최종 IUU 선박목록 등재 여부가 불분명한 선박마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따라서 제3조(j)의 선박은 정보교환대상으로 하지 않을 필요가 있음.

마. WCPFC IUU 어선 목록의 변경

(1) 회원국 등의 목록 삭제 요청

(가) 조문 내용

- 자국 선박이 WCPFC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회원국 등과 비회원국 등은 각 회기 사이 언제든지 사무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적정한 서면정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박의 선박목록에서 삭제제를 요청할 수 있음(제25조).
- a) 해당 국가가 해당 선박이 모든 WCPFC 본존관리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였다는 점, 그리고,
- b) 해당 국가가 협정지역에서 해당 선박의 어업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와 관련한 기국의 책무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 c) 해당 국가가 해당 선박이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게 된 IUU 어업에 대하여 기소 또는 적정한 강도의 제재부과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하였다는 점, 또는
- d) 해당 선박 소유자가 변경되고 새로운 선주가 이전 선주가 더 이상 해당선박에 대하여 법적, 재정적,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해당 선박에 대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선주는 IUU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 e) IUU 어업을 한 선박과 관련한 사건이 최초 해당 선박을 목록등재를 신청한 국가와 기국 사이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는 사실

(나) 검토의견

- 제3조(j)에 의하여 어떤 선박을 IUU 목록에 등재하게 된 원인이 된 IUU 선박을 선박 소유자가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도 해당 선박을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런데, 제25조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다) 수정안

f)항으로 “해당 선박의 소유자가 동 선박이 제3조(j)에 의하여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게 된 IUU 어선을 더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추가

(2) 사무국장의 조치

(가) 조문내용

- 사무국장은 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입증정보를 첨부하여 삭제요구를 회원국 등에 송부하고, 회원국 등은 즉시 수령사실을 통지하여야함. 송부된 10일 이내에 수령사실의 통보가 없으면, 사무국장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삭제요구를 통지해야함(26조).
- 각 회원국은 삭제요구서를 검토하여, 삭제요구를 수령하지 40일 이내에 사무국장에게 서면으로 결정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통지해야 하며, 삭제요구에 대한 결정은 절차규정 30조에 의하여 진행됨(제27조).
- 회원국이 제27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해당 선박의 삭제하는데 동의하면, 사무국장은 회원국등, 비회원국등, FAO 및 다른 지역 수산관

리기구에 통보하며, WCPFC 웹사이트에서 공표된 선박목록에서 해당 선박을 삭제함(제28조).

- 회원국등이 해당 선박을 IUU 어선 목록에서 삭제하는데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은 IUU 어선 목록에 남게 되며, 사무국장은 해당 선박의 삭제를 요구한 회원국 등 및 비회원국 등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29조).

(나) 검토의견 : 이견 없음.

V. 보존관리조치 수정안

1. 제1조 (현행 유지)

제1조 위원회는 매년 연례회의에서 WCPF 협정과 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협정적용지역에서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에 대하여 조업활동을 한 선박을 확인하여, 보존조치에서 수립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목록(IUU 선박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다음 년도에 수정한다.

※ 사무국컨설팅 논문 조문안을 채택하지 않고 현행 유지

2. 제3조 (추가)

제3조 이 보존조치를 위하여, 회원국 등이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하여 적절한 서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WCPFC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들을 조업하는 선박들은 협정지역에서 IPOA-IUU가 언급하고 있는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j. 해당 선박이 WCPFC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실질적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용선자)의 지배를 받는 사실.

※ 선박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소유자로 함

3. 제4조 (추가)

제4조 회원국 등은 TCC 연례회의 120일전까지 사무국장에게 당해 연도 및 전년도 TCC 연례회의 개최 전 120일 이후에 협약지역에서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명단을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면 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국 등이 이종으로 명단을 제출하지 않도록 기간을 명확화

※ 사무국 컨설팅 논문 권고안에 있는 조문 추가 내용을 불채택

4. 제8조 (추가)

제8조 회원국 등은 IUU 선박 목록 초안을 수령하는 즉시 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의 행동과 명칭, 국기, 등록 소유자의 변경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들 선박을 세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선박이 IUU 선박 목록 초안에 들어 있는 회원국 등이 아닌 국가는 당해 선박들의 행동과 명칭, 국기, 등록 소유자의 변경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들 선박을 세밀하게 감시하도록 촉구된다.

※ 사무국 컨설팅 논문에 나와 있는 권고안 반영

5. 제9조 (추가)

제9조 1.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기국인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은 최소한 TCC 연례회의 개최전 30일 이전에 사무국장에게 적절한 서면 정보를 포함하여 제15조에 규정된 사실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여야 한다.

※ 기국이 전달하는 의견을 제15조 추정 반복 사항과 동일하게 함

2. 회원국 등은 선박의 기국인 회원국 등 또는 비회원국이 당해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인 자국민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최대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런 요청이 있는 지 2개월 내에 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국가와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기국이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 국가에 대한 조사요청 권한 명시

6. 제15조 (추가)

제15조 1. TCC는 선박의 기국이 다음 사항을 주장 입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IUU 선박 잠정 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a) 생략

(b) 문제된 IUU 어업활동에 대하여 기소, 적정한 강도의 제재 부과, 증
몰수 또는 추징 등과 같은 효과적 행동이 조치되었다는 사실

(c) 생략

(d) 해당 선박 소유자가 변경되고 이전 선주가 더 이상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적, 재정적,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해당 선박에 대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선주가 IUU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제25조에 규정된 IUU 선박 삭제 요청 사유를 사전적으로 등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유로 추가함

2. TCC는 제3조(j)에 의한 선박의 기국이 다음 사항을 주장 입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IUU 선박 잠정 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a.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일치하거나, IUU 어업 외의 목적으로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다는 사실. 단, 법인세 절감, 조세회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며, 적절한 조사를 통해서도 실제 소유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박을 영구히 IUU에 등재

b. 해당 선박이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거나, 지배 수준이 해당 선박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사실

c. 해당 선박의 지배자가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

d. 선박 소유자의 감독 또는 관리 상 소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이 IUU 어업을 하였고,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단, 선박의 IUU어업 사실이 선박 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IUU 어업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관련 선박에 대해 영구적인 어업행위 금지령 시행

※ 제3조(j)에 특유한 추정번호 사유를 모아서 제2항을 신설함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TCC는 기국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WCPFC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주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을 잠정목록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 사무국 컨설팅 논문 권고안을 받아들여 제3항을 신설함

7. 제16조 (추가)

제16조 TCC는 명단을 제출한 회원국 등이 제5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국 등이 제출한 서면정보가 제3조에 규정된 상황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을 IUU 어선 잠정 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제3조에 규정된 IUU 어선 추정의 전제사실은 이를 주장하면서 명단을 제출한 회원국 등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함

8. 제19조 (추가)

19. IUU 선박 목록 초안, IUU 선박 잠정 목록 그리고 WCPFC IUU 선박 목록에는 다음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iii) 이익의 수혜자를 포함한 소유자와 전소유자, 혹은 선박에 대한 지배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연인 혹은 법인

※ 사무국 컨설팅 논문 권고안을 받아들여 추가함

9. 제20조 (추가)

제20조 위원회는 매 연례회의에서 적정한 서면정보가 새롭게 제출되면 이를 참작하여 IUU 어선 잠정목록을 심사하여 ---(중략)---새로운 WCPFC IUU 어선목록을 채택한다. 다만, 제3조(j)의 규정에 의한 선박은 WCPFC IUU 어선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제3조(j) 합리화 방안 중 대안 3을 채택하는 경우의 방안

10. 제23조 (추가)

제23조 사무국장은 WCPFC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WCPFC IUU 선박 목록의 공표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IUU 어업을 예방, 억지, 근절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목록을 FAO 혹은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제공해야 한다. 단, 제3조(j) 규정에 따라 등재된 선박의 목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필요한 경우,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등재 사유를 구분한

별도의 IUU 잠정 선박 목록을 개발하도록 한다.

- ※ 제3조(j)가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공대상에 제외

11. 제25조 (추가)

제25조 자국 선박이 WCPFC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회원국 등과 비회원국 등은 각 회기 사이에 언제든지 사무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적정한 서면정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박의 선박목록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a.~e. (생략)

f.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

- ※ 제3조(j)에 특유한 삭제 사유를 추가

별첨 : 신규 조문 대조표

현행 조문	사무국 컨설팅 논문안	수정 조문안
<p>제1조 위원회는 매년 연례회의에서 WCPF 협정과 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협정적용지역에서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에 대하여 조업활동을 한 선박을 확인하여, 이 보존조치에서 수립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목록(IUU 어선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다음 년도에 수정한다.</p>	<p>제1조 위원회는 매년 연례회의에서 WCPF 협정과 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협정적용지역에서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에 대하여 조업활동을 한 선박, 또는 <u>WCPFC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가 지배하는 선박을 확인하여</u>, 이 보존조치에서 수립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목록(IUU 어선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다음 년도에 수정한다. (추가)</p>	<p>제1조 위원회는 매년 연례회의에서 WCPF 협정과 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협정적용지역에서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에 대하여 조업활동을 한 선박을 확인하여, 이 보존조치에서 수립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목록(IUU 선박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하면 다음 년도에 수정한다. (현행 유지)</p>

<p>제3조 이 보존조치를 위하여, 회원국 등이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하여 적절한 서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WCPFC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들을 조업하는 선박들은 협정지역에서 IPOA-IUU가 언급하고 있는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p> <p>j. 해당 선박이 WCPFC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의 지배를 받는 사실</p>	<p>제3조 (해당 사항 없음)</p>	<p>제3조 이 보존조치를 위하여, 회원국 등이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하여 적절한 서면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WCPFC 협정이 취급하는 어족들을 조업하는 선박들은 협정지역에서 IPOA-IUU가 언급하고 있는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p> <p>j. 해당 선박이 WCPFC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u>실질적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 용선 계약의 경우에는 용선자</u>)의</p>
--	------------------------------	--

<p>제4조 회원국 등은 기술이행위원회(TCC) 연례회의 120일 전까지는 사무국장에게 해당 년도 및 전년도에 협정적용지역에서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명단을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면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 회원국 등은 기술이행위원회(TCC) 연례회의 120일 전까지는 사무국장에게 해당 년도 및 전년도에 협정적용지역에서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u>그리고 WCPFC IUU 선박 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명단을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면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u></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배를 받는 사실. (추가)</p> <p>4. 각 회원국 등은 기술이행위원회(TCC) 연례회의 120일 전까지는 사무국장에게 해당 년도 및 전년도 <u>TCC 연례회의 개최 전 120일 이후에</u> 협정적용지역에서 IUU 어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명단을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서면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컨설팅 논문 안 삭제 및 수정안 제시)</p>
---	--	---

제8조 회원국 등은 IUU 어선 목록 초안을 수령하는 즉시 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의 활동과 명칭, 국기, 등록 소유자의 변경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들 선박을 세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제8조 회원국 등은 IUU 선박 목록 초안을 수령하는 즉시 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의 활동과 명칭, 국기, 등록 소유자의 변경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들 선박을 세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선박이 IUU 선박 목록 초안에 들어 있는 회원국 등이 아닌 국가는 당해 선박의 활동과 명칭, 국기, 등록 소유자의 변경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들 선박을 세밀하게 감시하도록 촉구된다.(추가)

제8조 회원국 등은 IUU 선박 목록 초안을 수령하는 즉시 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의 활동과 명칭, 국기, 등록 소유자의 변경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들 선박을 세밀하게 감시해야 한다. 선박이 IUU 선박 목록 초안에 들어 있는 회원국 등이 아닌 국가는 당해 선박들의 활동과 명칭, 국기, 등록 소유자의 변경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도록 이들 선박을 세밀하게 감시하도록 촉구된다.(건설링 논문안 채택)

<p>제9조 적절한 경우 목록에 자국 선박이 들어 있는 회원국 등 및 비회원국은 TCC 연례회의 30일 전까지 해당 선박이 WCPFC 보존조치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해당국가의 법령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거나, WCPFC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족만을 조업 한 점을 나타내는 의견을 적절한 서면정보를 첨부하여 사무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p>제9조 적절한 경우 목록에 자국 선박이 들어 있는 회원국 등 및 비회원국은 TCC 연례회의 30일 전까지 해당 선박이 WCPFC 보존조치 또는 어떤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해당국가의 법령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거나, WCPFC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어족만을 조업하였거나, <u>당해 선박이 WCPFC IUU 선박목록에 들어 있는 선박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나타내는 의견을 적절한 서면정보를 첨부하여 사무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추가)</u></p>	<p>제9조 1. 적절한 경우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기국인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은 최소한 TCC 연례회의 개최전 30일 이전에 사무국장에게 적절한 서면 정보를 포함하여 <u>제15조에 규정된 사실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여야 한다.</u></p> <p>2. <u>회원국 등은 선박의 기국인 회원국 등 또는 비회원국이 당해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인 자국민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그런 요청이 있는지 2개월 내에 조사결과에 관한</u></p>
---	---	---

		<p><u>보고서를 요청국가와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추가)</u></p>
<p>제15조 TCC는 선박의 기국이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IUU 어선 잠정 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p> <p>a. 선박이 WCPC 협정지역 혹은 어떤 국가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면서 WCPFC 협정이나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한 사실, WCPFC 협정이 취급하지 않는 어족만을 조업한 사실</p> <p>b.. 문제된 IUU 어업활동에 대하여 기소, 적정한 강도의 제재</p>	<p>제15조 1. <u>TCC는 선박의 기국이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IUU 어선 잠정 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u></p> <p>a.~c. (생략)</p> <p>d. <u>선박이 WCPFC 어선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사실</u></p> <p><u>2. TCC는 기국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보아 다음 사항이 만족</u></p>	<p>제15조 1. <u>TCC는 선박의 기국이 다음 사항을 주장 입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IUU 선박 잠정 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u></p> <p>a. 생략</p> <p>b. 문제된 IUU 어업활동에 대하여 기소, 적정한 강도의 제재 부과, 즉 몰수 또는 추징 등과 같은 효과적 행동이 조치되었다는 사실</p> <p>c. 생략</p>

<p>부과 등과 같은 효과적 행동이 조치되었다는 사실</p> <p>c. IUU 어업을 한 선박과 관련한 사건이 최초 해당 선박의 목록 등재를 신청한 국가와 기국 사이에__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는 사실</p>	<p>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을 IUU 선박 목록 초안 또는 IUU 선박 잠정 목록에 등재하지 않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p> <p>a.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 소유자의 지배 수준이 IUU 선박 목록 초안 또는 선박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성격인 경우</p> <p>b. 해당선박이 협정적용지역에서 WCPFC 보존조치에 일치되게 조업 하였거나, 어</p>	<p>d. <u>해당 선박 소유자가 변경되고 이전 선주가 더 이상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적, 재정적,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해당 선박에 대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선주가 IUU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u></p> <p>2. TCC는 제3조(j)에 의한 선박의 기국이 다음 사항을 주장 입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을 IUU 선박 잠정 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p> <p>a.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p>
--	---	---

	<p><u>면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일치되게 조업하였거나, 또는 WCPFC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어족만을 조업해 온 경우</u></p> <p><u>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TCC는 기국이 제공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 비추어 WCPFC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주의 지배하에 있는 선박을 목록초안 또는 잠정목록에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추가)</u></p>	<p><u>의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일치하거나, IUU 어업 외의 목적으로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다는 사실. 단, 법인세 절감, 조세회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실제 소유자와 명목상 소유자가 불일치하며, 적절한 조사를 통해서도 실제 소유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박을 영구히 IUU에 등재</u></p> <p><u>b. 해당 선박이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 소유자의 지배하에 있지 않거나, 지배</u></p>
--	---	--

		<p><u>수준이 해당 선박의 어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사실</u></p> <p>c. <u>해당 선박의 지배자가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u></p> <p>d. <u>선박 소유자의 감독 또는 관리 상 소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선박이 IUU 어업을 하였고, 선박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단, 선박의 IUU어업 사실이 선박소유주의 이익을 위해 한</u></p>
--	--	---

		<p><u>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u> <u>기 위해, IUU어업을 3회 이상</u> <u>한 경우에는 관련 선박에 대</u> <u>해 영구적인 어업행위 금지령</u> <u>시행</u></p> <p>3. <u>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u> <u>TCC는 기국이 제공한 정보를 포</u> <u>함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에</u> <u>비추어 WCPFC 목록에 등재되어</u> <u>있는 선박 소유주의 지배하에 있</u> <u>는 선박을 잠정목록에 등록하지</u> <u>않을 수 있다. (추가)</u></p>
<p>제16조 TCC는 명단을 제출한</p>	<p>제16조 (해당사항 없음)</p>	<p>제16조 TCC는 명단을 제출한</p>

<p>회원국 등이 제5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을 IUU 어선목록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p>		<p>회원국 등이 제5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u>회원국 등이 제출한 서면정보가 제3조에 규정된 상황을 입증하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을 IUU 어선 잠정 목록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추가)</u></p>
<p>제19조 IUU 선박 목록 초안, IUU 선박 잠정 목록 그리고 WCPFC IUU 선박목에는 다음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p> <p>(iii) 실질적 소유자를 포함한 소유자와 전소유자,</p>	<p>제19조 IUU 선박 목록 초안, IUU 선박 잠정 목록 그리고 WCPFC IUU 선박목에는 다음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p> <p>(iii) 실질적 소유자를 포함한 소유자와 전소유자, <u>혹은 선박에 대한 지배를 행사할 수</u></p>	<p>제19조 IUU 선박 목록 초안, IUU 선박 잠정 목록 그리고 WCPFC IUU 선박목에는 다음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p> <p>(iii) 실질적 소유자를 포함한 소유자와 전소유자, <u>혹은 선박에 대한 지배를 행사할 수</u></p>

	<p style="text-align: center;"><u>있는 자연인 혹은 법인</u>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u>있는 자연인 혹은 법인</u> (권설텡 논문안 채택)</p>
<p>제20조 위원회는 매 연례회의에서 적정한 서면정보가 새롭게 제출되면 이를 참작하여 IUU 어선 잠정 목록을 심사하여 ---(<u>중략</u>)--- 새로운 WCPFC IUU 어선목록을 채택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0조 (해당 사항 없음)</p>	<p>제20조 위원회는 매 연례회의에서 적정한 서면정보가 새롭게 제출되면 이를 참작하여 IUU 어선 잠정 목록을 심사하여 ---(<u>중략</u>)--- 새로운 WCPFC IUU 어선목록을 채택한다. <u>다만, 제3조(j)의 규정에 의한 선박은 WCPFC IUU 어선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u>(추가)</p>
<p>제23조 사무국장은 WCPFC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WCPFC IUU 선박 목록의 공표를</p>	<p style="text-align: center;">제23조 (해당 사항 없음)</p>	<p>제23조 사무국장은 WCPFC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WCPFC IUU 선박 목록의 공표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p>

<p>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IUU 어업을 예방, 억지, 근절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목록을 FAO 혹은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제공해야 한다.</p>		<p>해야 하고, IUU 어업을 예방, 억지, 근절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박목록을 FAO 혹은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제공해야 한다. 단, 제3조(j) 규정에 따라 등재된 선박의 목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필요한 경우, IUU 선박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등재 사유를 구분한 별도의 IUU 잠정 선박 목록을 개발하도록 한다. (추가)</p>
<p>제25조 자국 선박이 WCPFC IUU</p>		<p>제25조 자국 선박이 WCPFC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된 회원국 등과 비회원국은 각 회기 사이에 언제든지</p>

어선 목록에 등재된 회원국 등과 비회원국은 각 회기 사이에 언제든지 사무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적절한 서면정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박의 선박목록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a. 해당 국가가 해당 선박이 모든 WCPFC 본존관리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였다는 점, 그리고

b) 해당 국가가 협정지역에서 해당 선박의 어업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와 관련한 기국의 책

지 사무국장에게 다음 사항을 입증하는 적절한 서면정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선박의 선박목록에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a.~e. 생략

f.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
(추가)

<p>무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p> <p>c) 해당 국가가 해당 선박이 IUU 어선 목록에 등재되게 된 IUU 어업에 대하여 기소 또는 적절한 강도의 제재부과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하였다는 점, 또는</p> <p>d) 해당 선박 소유자가 변경되고 새로운 선주가 이전 선주가 더 이상 해당선박에 대하여 법적, 재정적, 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해당</p>		
--	--	--

<p>선박에 대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선주는 IUU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p> <p>e) IUU 어업을 한 선박과 관련한 사건이 최초 해당 선박을 목록등록을 신청한 국가와 기국 사이에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는 사실</p>		
--	--	--